

의안 번호	927
----------	-----

울산광역시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8. 29.(수)
- 제출자 : 권태호 의원 외 6명
- 위원회회부 : 2012. 8. 29.(수)
- 위원회심사 : 2012. 9. 6.(목)

2. 제정이유

- 가로정비 업무에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을 한 지 오래되었으나, 도로법의 일반 도로점용 규정에 의하여 노점을 관리하고 있음
- 노점업무의 체계적인 관리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도로 점용허가 등
 - ▶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갱신허가 기한 만료는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새로운 시설물 점용허가 시 저소득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
- 행위의 금지
 - ▶ 운영자는 도로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 허가취소
 - ▶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 ▶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동일한 위반행위로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4. 근거법령

- 「도로법」 제38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노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듯한 느낌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노점”에 대한 정의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노점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호의 “노점(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거리에 설치된 노점을 말한다」는 규정을 「노점이란 “영업행위를 위하여 도로 위에 물건을 차려놓거나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제1호의 「“노점”(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는 규정 중 괄호 안의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는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이하 조문에서 “시설물”을 “노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